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마포구 제4선거구 출신 김기덕 의원입니다.

-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하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‘장애등급제’가 폐지되고, ‘장애정도’ 기준이 도입되어 등록 장애인 구분을 기존 6등급 구분에서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’(기존 1~3등급)와 ‘심하지 않은 장애’(기존 4~6등급)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됨에 따라

-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입장료 감면 규정에 새로 도입된 ‘장애정도’ 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.

-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